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원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65

발 의 년 월 일 : 2025년 10월 19일
발 의 자 : 김원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석주, 고광민, 김영철, 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 민병주, 윤기섭, 윤종복, 이성배, 임춘대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○ 세운광장은 도심 속에서 시민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,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활동 거점임.

○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다양화로 주최 측의 행사 기획 · 협의 · 안전관리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.

○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주최 측의 준비와 안전관리 여건을 강화하고, 광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‘세운광장’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(안 제5조).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60일 전부터 7일”을 “90일 전부터 5일”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사용신청)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,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,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(이하 "사용일"이라 한다)의 60일 전부터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5조(사용신청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90일 전부터 5일 - 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(사용신청)의 내용을 수정하여, 세운광장 사용 신청 시 시장에게 사용허가서 제출기간을 변경(60일 전부터 7일 → 90일 전부터 5일)하고자 한 것으로,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김 진 형
	☏ 02-2180-7954
	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